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

의안 번호	44

제출년월일 : 2026. 5. 31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Ⅰ. 제안이유

2025회계연도 결산을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10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Ⅱ. 주요내용

1. 결산개요 :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"별첨"

2. 세입·세출결산

가. 총괄

(단위 : 원, %)

구 분	예산액 ㉮	전년도이월액 ㉯	예산현액 ㉰=㉮+㉯	세입결산액 ㉱	비율 ㉱/㉰	세출결산액 ㉲	비율 ㉲/㉰	잉여금 ㉳=㉱-㉲	비율 ㉳/㉰
합 계	**752,174,072,000**	**208,206,893,289**	**960,380,965,289**	**980,912,051,728**	**102.1**	**768,794,957,856**	**80.1**	**212,117,093,872**	**22.1**
일반회계	686,202,258,000	161,132,440,399	847,334,698,399	865,274,011,569	102.1	691,150,857,276	81.6	174,123,154,293	20.5
특별회계	65,971,814,000	47,074,452,890	113,046,266,890	115,638,040,159	102.3	77,644,100,580	67.1	37,993,939,579	33.6

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, %)

구 분	예산액 ㉮	전년도이월액 ㉯	예산현액 ㉰=㉮+㉯	징수결정액 ㉱	실제수납액 ㉲	정리 보류액㉳	미수납액 ㉴=㉱-㉲-㉳	비율(%) ㉲/㉰	비율(%) ㉲/㉱
합 계	**752,174,072,000**	**208,206,893,289**	**960,380,965,289**	**991,006,728,149**	**980,912,051,728**	**1,037,169,263**	**9,057,507,158**	**102.1**	**99.0**
일반회계	686,202,258,000	161,132,440,399	847,334,698,399	873,981,754,102	865,274,011,569	1,037,169,263	7,670,573,270	102.1	99.0
특별회계	65,971,814,000	47,074,452,890	113,046,266,890	117,024,974,047	115,638,040,159	0	1,386,933,888	102.3	98.8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액 ㉮	예산성립후증감액 ㉯	예산현액 ㉰=㉮+㉯	지출액 ㉱	다음연도이월액 ㉲	보조금반납액 ㉳	집행잔액 ㉴=㉰-㉱-㉲-㉳
합 계	**752,174,072,000**	**208,206,893,289**	**960,380,965,289**	**768,794,957,856**	**154,968,781,330**	**6,935,671,821**	**29,681,554,282**
일반회계	686,202,258,000	161,132,440,399	847,334,698,399	691,150,857,276	120,397,326,375	6,880,355,060	28,906,159,688
특별회계	65,971,814,000	47,074,452,890	113,046,266,890	77,644,100,580	34,571,454,955	55,316,761	775,394,594

라.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결산상 잉여금	다음연도 이월액				보조금 실제반납금	지정재원 잉여금	순세계 잉여금
	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			
합 계	**212,117,093,872**	**154,968,781,330**	**62,938,064,835**	**15,359,032,660**	**76,671,683,835**	**7,273,648,060**	**328,201,508**	**49,546,462,974**
일반회계	174,123,154,293	120,397,326,375	54,399,367,335	15,177,259,100	50,820,699,940	7,218,331,299	328,201,508	46,179,295,111
특별회계	37,993,939,579	34,571,454,955	8,538,697,500	181,773,560	25,850,983,895	55,316,761	0	3,367,167,863

마.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○ 예산이용 : 없음

○ 예산전용 : 5건 / 129,000,000원

○ 예산이체 : 없음

바. 예비비 지출

(단위 : 원)

구 분	예비비 예산액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
합 계	**8,214,511,000**	**663,536,000**	**651,869,878**	**0**	**11,666,122**
일반회계	8,114,511,000	663,536,000	651,869,878	0	11,666,122
특별회계	100,000,000	0	0	0	0

3. 기금결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전년도 말 조 성 액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 말 조 성 액
		증가 또는 감소액	조성액	사용액	
합 계	**25,509,659,534**	**5,037,056,676**	**14,436,602,876**	**9,399,546,200**	**30,546,716,210**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	78,828,756	2,335,536	2,335,536	0	81,164,292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11,531,048,452	2,345,337,065	10,345,337,065	8,000,000,000	13,876,385,517
평창군자활기금	515,011,985	15,819,790	15,819,790	0	530,831,775
평평창군고향사랑기금	889,654,510	371,270,930	426,270,930	55,000,000	1,260,925,440
평창군체육진흥기금	2,233,943,835	△323,607,232	568,392,768	892,000,000	1,910,336,603
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	217,701,357	31,662,970	31,662,970	0	249,364,327
평창군재난관리기금	1,215,946,876	522,739,550	532,239,550	9,500,000	1,738,686,426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15,771,103	△3,345,333	23,446,867	26,792,200	112,425,770
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8,711,752,660	2,074,843,400	2,491,097,400	416,254,000	10,786,596,060

4. 재무제표

(단위 : 원)

구 분 / 회계별	재정상태표			재정운영표		
	총자산	총부채	순자산	총비용	총수익	운영결과
합 계	**3,978,960,959,956**	**49,009,592,229**	**3,929,951,367,727**	**603,929,331,107**	**686,844,945,877**	**(82,915,614,770)**
일반회계	3,590,063,402,085	48,445,866,730	3,541,617,535,355	573,741,944,251	655,270,256,865	(81,528,312,614)
기타특별회계	310,144,796,407	559,223,601	309,585,572,806	31,395,196,526	39,815,424,039	(8,420,227,513)
기금회계	32,118,334,330	2,150,200	32,116,184,130	9,409,539,333	14,296,663,686	(4,887,124,353)
지방공기업특별회계	248,172,143,134	2,351,698	248,169,791,436	23,202,032,997	11,281,983,287	11,920,049,710
내부거래	(201,537,716,000)	0	(201,537,716,000)	(33,819,382,000)	(33,819,382,000)	0

5. 성과보고서

(단위 : 개, 원)

실국별	성과목표						결산액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성과달성도			
		개수	지표수	초과달성	달성	미달성	
합 계	8	79	158	27	96	35	744,392,630,951
행정담당관	1	4	7	0	3	4	78,707,876,678
기획재정국	1	22	39	4	29	6	145,397,173,378
관광경제국	1	17	35	7	19	9	117,861,033,056
도시안전국	1	21	44	8	29	7	276,173,270,348
의회사무과	1	5	5	3	2	0	1,239,233,289
보건의료원	1	7	19	4	8	7	15,646,386,523
농업기술센터	1	1	2	1	1	0	86,583,848,224
상하수도사업소	1	2	7	0	5	2	17,139,623,169
읍면	0	0	0	0	0	0	5,644,186,286

※ 결산액 : 일반회계 + 기타특별회계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